##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00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이종배·서천호·송석준

박덕흠 • 이만희 • 이종욱

김성원 · 성일종 · 신동욱

김용태 • 권영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형법」상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처벌함.

그런데 위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른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합한 금액은 아니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인바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등),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과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형법」상 특정재산범죄가 성립할 뿐 포괄일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3조의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죄"를 "죄(이하 "특정재산범죄"라 한 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 제3조제1항의 특정재산 범죄(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경합범(「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을 포함한다)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제3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0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	①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			
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			
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			
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u>죄</u> 를	<u>죄(이</u>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	<u>하 "특정재산범죄"라 한다)</u>		
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			
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			
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3조의2(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 제3조제1항의 특		
	정재산범죄(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경합범(「형		

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을 포함한다)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제3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